

업무상 사고와 질병 이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은수

개요

1. 산재유형 및 현황
2. 직업병/직업성질환
3. 산재 승인 너머

산재 유형 및 현황

산업재해란?

-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따위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근로자에게 생긴 신체상의 재해. *표준국어대사전*
-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사고 재해 vs 질병 재해

사고 재해

추락, 충돌 등 업무상 사유가 비교적 명확 → 산재승인율 92%이상

질병 재해

- 작업장 유해인자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서 발생
- 대부분의 질병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음
예) 뇌심혈관질환
- 단, 급성 고농도 노출시 사고성 재해에 가깝다.

업무상 질병

-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일컬음
- **사고성 질병** :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돌발적이거나 시간적, 장소적으로 명확한 사건인 질병
- 부상에 의한 질병 외에 작업장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나 기타 가스 등에 의해 질식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기계에서 누출된 산에 묻어 피부가 부식되는 경우 등
→ 외부적으로 인식이 용이하고 인과관계의 증명이 용이
- **직업성 질병** : 장기간에 걸친 유해인자의 가중 축적에 의한 질병
→ 작업수행과정이나 환경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생기는 것이 보통이고 외부적인 인식이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고 논란의 여지가 발생

업무상 질병 판정 매뉴얼, 근로복지공단

산재 통계/규모

‘연 10만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2천명 이상이 죽는다.’

- 2019년 재해자수: **109,242명**(전년 동기 대비 6,937명(6.8%) 증가)
 - 사고 재해자수: 94,047명(전년 동기 대비 3,215명(3.5%) 증가)
 - 질병 재해자수: 15,195명(전년 동기 대비 3,722명(32.4%) 증가)
- 2019년 사망자수: **2,020명**(전년 동기 대비 122명(5.7%) 감소)
 - 사고 사망자수: 855명(전년 동기 대비 116명(11.9%) 감소)
 - 질병 사망자수: 1,165명(전년 동기 대비 6명(0.5%) 감소)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노동부 산재통계의 한계

1.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을 기초로 한 통계

-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이 승인된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재해 포함) 기준
- **산재보험법과 유사한 다른 법체계 적용 대상은 제외됨**

2.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출퇴근 재해 제외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산재은폐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HOME > 의료정책

은폐되는 산업재해...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이 부담 떠안아

산재은폐 따른 건보 재정누수 최소 277억~최대 3218억 추계...산재사고 건강보험 적용시 '산재은폐' 인식 부족해



김상기 기자 송민 2019.03.05 11:39 댓글 0



산재환자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환수된 금액은 2014년 66억원, 2015년 65억원, 2016년 70억원, 2017년 75억원, 2018년 58억원 (9월기준). 총 334억

연간 최대 3218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 보고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진현).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의뢰로 실시.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조사표와 산업재해 신청서 정보 건강보험과 연계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와 지급방법 개선 ▲산업재해 은폐시 처벌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해당 재해자에 대한 정보를 건보공단과 연계해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 지급된 공단부담금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재해를 은폐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강화하고 은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도를 대폭 개선해 포상금의 규모를 높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산재 보험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n	226	376	264	193	31
	%	20.7	34.5	24.2	17.7	2.8
2) 산재보험 처리시 보상이 적어서	n	112	350	386	216	26
	%	10.3	32.1	35.4	19.8	2.4
3) 산업재해 적용범위(대상자, 사고, 질병 등)가 좁아서	n	70	177	248	198	87
	%	6.4	16.1	22.7	18.2	7.9
4) 증상이 경미하고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서	n	36	103	103	103	103
	%	3.3	9.5	9.5	9.5	9.5
5) 산재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n	32	103	103	103	103
	%	2.9	9.5	9.5	9.5	9.5
6) 산재 신청해도 승인이 되지 않거나 않을 것 같아서	n	21	103	103	103	103
	%	1.9	9.5	9.5	9.5	9.5
7) 회사 및 원/하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n	13	103	103	103	103
	%	1.2	9.5	9.5	9.5	9.5
8) 산재 처리자에 대한 부정적 조직문화 때문에	n	22	103	103	103	103
	%	2.0	9.5	9.5	9.5	9.5
9) 회사에서 처리 비용을 주어서 (공상처리)	n	41	103	103	103	103
	%	3.8	9.5	9.5	9.5	9.5
10) 회사의 산재보험요율 인상 때문 (산재 보험료 납부액 증가)	n	44	103	103	103	103
	%	4.0	9.5	9.5	9.5	9.5
11) 산업재해건수 증가로 인해 회사가 불이익 받을까봐 (입찰 감점, 가산점 불가)	n	28	103	103	103	103
	%	2.6	9.5	9.5	9.5	9.5
12) 고용노동부 조사감독 때문에 (법위반 지적, 환경개선비용과 과태료 납부)	n	30	73	324	457	226
	%	2.8	6.7	29.7	40.1	20.7
13) 근로자 과실로 인한 재해도 재해율에 반영되어서	n	36	96	418	398	142
	%	3.3	8.8	38.3	36.5	13.0

- 회사 및 원/하청업체로부터 불이익 받을까봐
- 회사가 불이익 받을까봐 (입찰 감점 등)
- 고용노동부 조사/감독 우려 (법 위반 지적, 환경개선비용과 과태료 납부)
- 산재 처리자에 대한 부정적 조직문화

직업병/직업성질환

한국의 직업병

- 1950년대 탄광의 진폐증
- 1960년대 진폐증, 소음성난청, 화학물질 중독
- 1970년대 도금작업시 크롬에 의한 비중격천공 (1972)
고무공장 노말헥산 중독 (1974)
- 1980년대 문송면 수은 중독(1988)
용접봉 제조공장에서 카드뮴중독 의심 사례 (1988)
파킨슨증후군 소견을 보이는 망간 중독 (1989)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
- 1990년대 TDI에 의한 직업성 천식 발생 /염료공장, 가구공장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최초 보고(1993)
DMF에 의한 전격성간염, 사망 /인조피혁공장(1993)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생식기계장애 /전자제품부품공장(1995)
벤젠 장기간 노출에 의한 골수이형성증/타이어공장 (1997)
용접공의 망간 중독
중금속과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 염색공의 방광암, 석유화학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한국의 직업병

2000년대 카드뮴제련업과 용접작업에서 카드뮴 중독
브롬화메틸에 의한 중추신경장애 /훈제방역작업
노말렉산에 의한 말초신경염 /전자제품 부품제조업
TCE(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홍반성질환(스티븐스존슨증후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집단 수은중독
DMF에 의한 독성간염
약품(제약회사), 빵가루(제빵회사)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조선소 노동자의 진동신경염

한국의 직업병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

1990년대 초반부터 뇌심혈관질환이 산재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시작
1994년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제정되면서 더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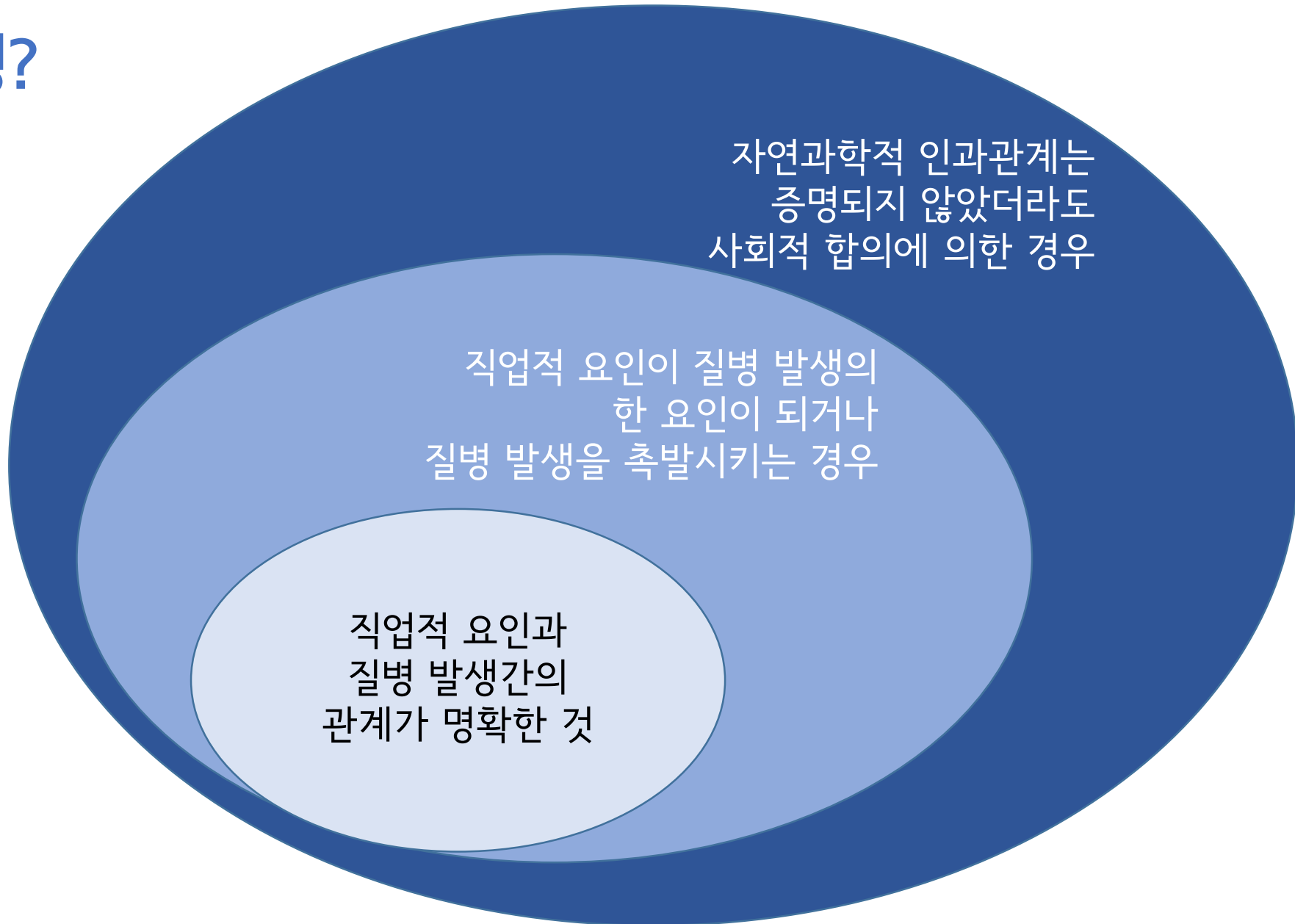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

1990년대초 한국통신 전화교환원 경견완장애 집단 발생

1994년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제정되었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환은 많지 않았음.

2000년대 들어 집단요양신청 - 선박건조, 자동차제조, 기계기구 제조 등 다양한 제조업

직업병?



직업병 vs 작업관련성 질환

- **직업병** : 작업(직업)에 의해 발생한 질병
예) 진폐증, 소음성 난청 등
- **작업관련성 질환** : 작업(직업)에 의해 악화되거나 작업과 관련하여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환
예)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등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질병재해)

구 분	총계	직업병								작업관련성질병						
		소계	진폐	난청	금속/ 중금속 중독	유기 화합물 중독	기타 화학 물질 중독	기타	소계	뇌심 질환	근골격계질환				기타	
											신체 부담 작업	요통	사고 성요 통	기타		
2019. 1~12 월	계	15,195	4,035	1,467	1,986	9	19	128	426	11,160	1,460	4,988	1,914	2,362	176	260
	요양 자	14,030	3,428	1,065	1,986	7	7	81	282	10,602	957	4,988	1,914	2,362	176	205
	사망 자	1,165	607	402	0	2	12	47	144	558	503	0	0	0	0	55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삭제 <2017. 10. 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3. 출퇴근 재해

-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계통별 직업성 질환

- 근골격계 질환
- 뇌심혈관질환
- 암
- 정신질환/자살
- 호흡기질환
- 피부질환
- 간질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 ✓ 반복적인 동작
- ✓ 부적절한 작업자세
- ✓ 무리한 힘의 사용
- ✓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 ✓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1단계

- 작업중 통증, 피로감
- 하룻밤 지나면 증상 없음
- 작업능력 감소 없음
- 며칠간 지속
- 악화와 회복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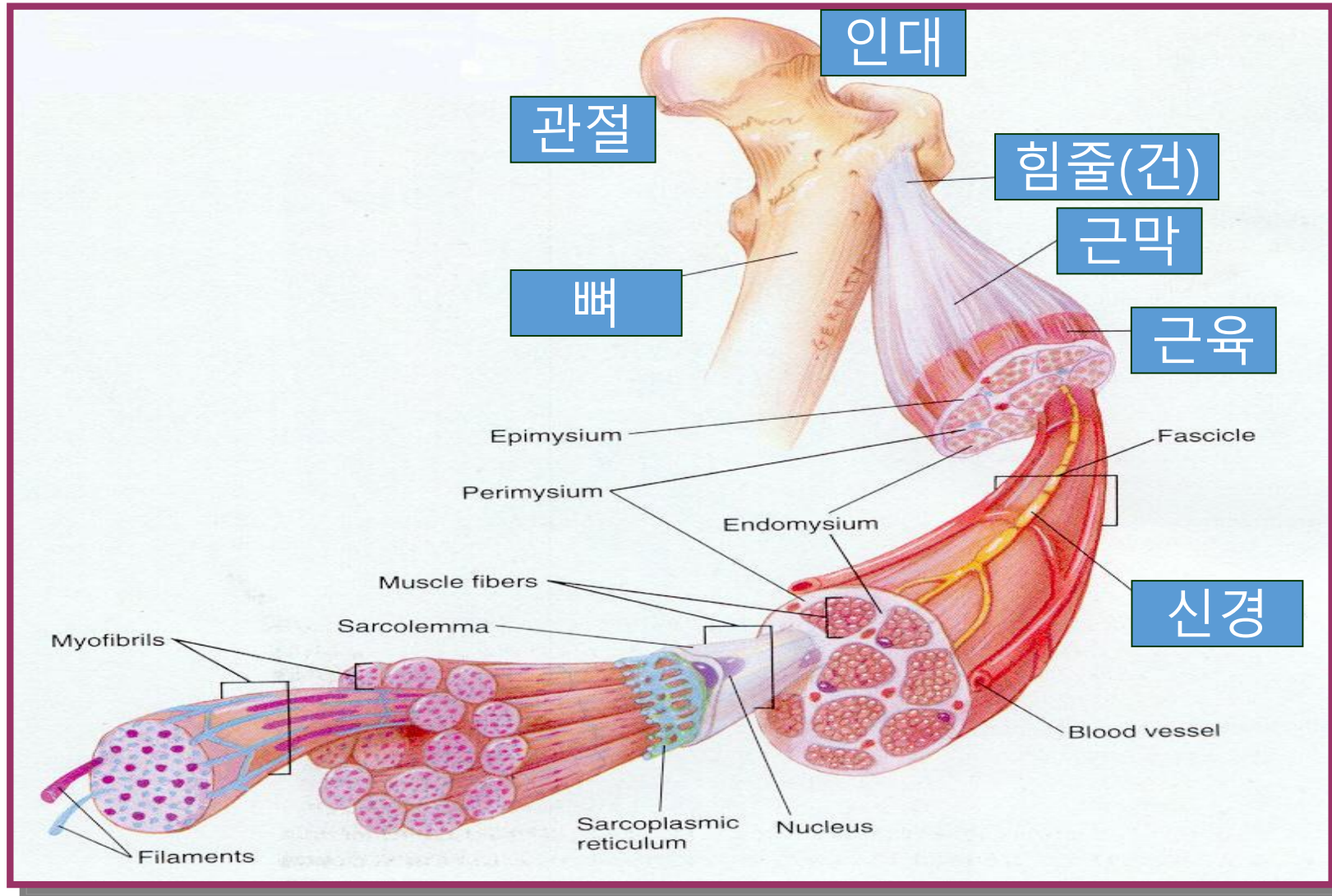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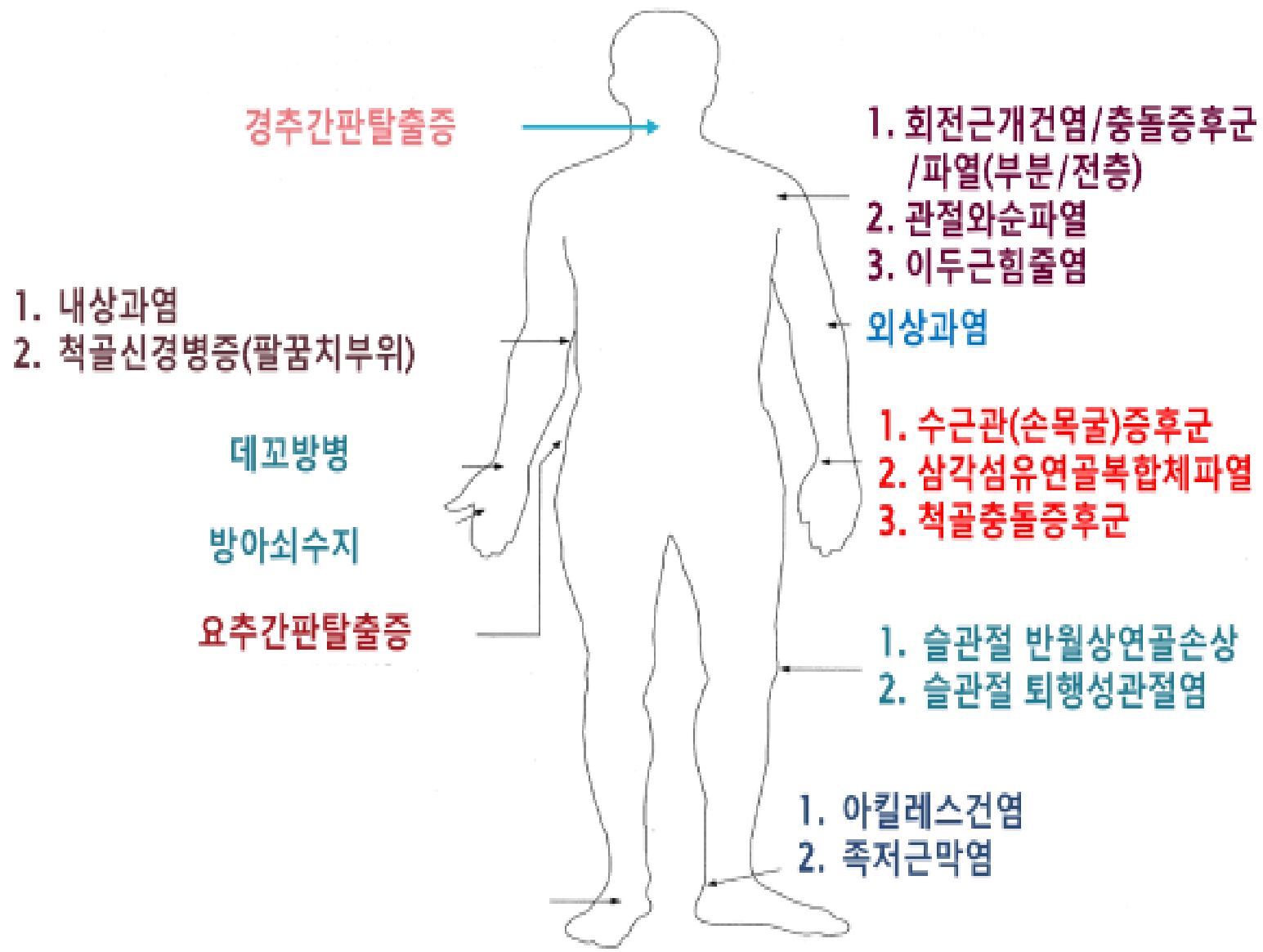
- 작업 초기부터 통증 발생
- 하룻밤 지나도 통증 지속
- 잠을 설침
- 작업능력 감소
- 몇 주, 몇 달 지속
- 악화와 회복 반복

3단계

- 휴식시간에도 통증
- 하루 종일 통증
- 통증으로 불면
- 작업수행 불가능
- 다른 일도 어려움

근골격계의 해부학적 구조





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상병명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1))
경추간판탈출증	용접원, 건설배관공, 형틀목공, 취부원	8년이상 (12개월이내)
회전근개 파열	형틀목공, 미장공, 주류·트럭상하차 배달원,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원, 의장·차체조립공, 조선용접·취부원, 급식조리원, 고무제품 성형·압출원 등	9년이상 (12개월이내)
요추간판탈출증	용접공, 건설배관공, 중량물 작업자2), 운전원	10년이상 (6개월이내)
	돌봄노동	5년이상 (6개월이내)
반월상연골파열	용접원, 제품조립(사상)원, 건설업 또는 광업종사자, 농림어업인	10년이상 (12개월이내)
	택배원, 이사작업원	5년이상 (12개월이내)
수근관증후군	건축석공, 의류 제조·수선, 도장공, 정육원, 미장공, 안마사, 용접원, 자동차정비원, 조리사	2년이상 (6개월이내)
상과염	조리사, 조리사 보조원, 제빵원, 자동차조립원, 택배원	1년이상 (2개월이내)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 수근관 : 손목앞 피부조직 밑으로 힘줄과 신경이 지나는 좁은 관
- 손가락 근육의 힘줄(건)이 붓거나, 손목부위 인대가 부어서 이 관이 좁아지면, 수근관을 지나는 **정중신경 (median nerve)**에 압박이 가해져 통증 발생
- 증상은 손목부위에 감각마비, 쑤심, 육신거리는 증상이 있고, 특히 밤에 통증이 더욱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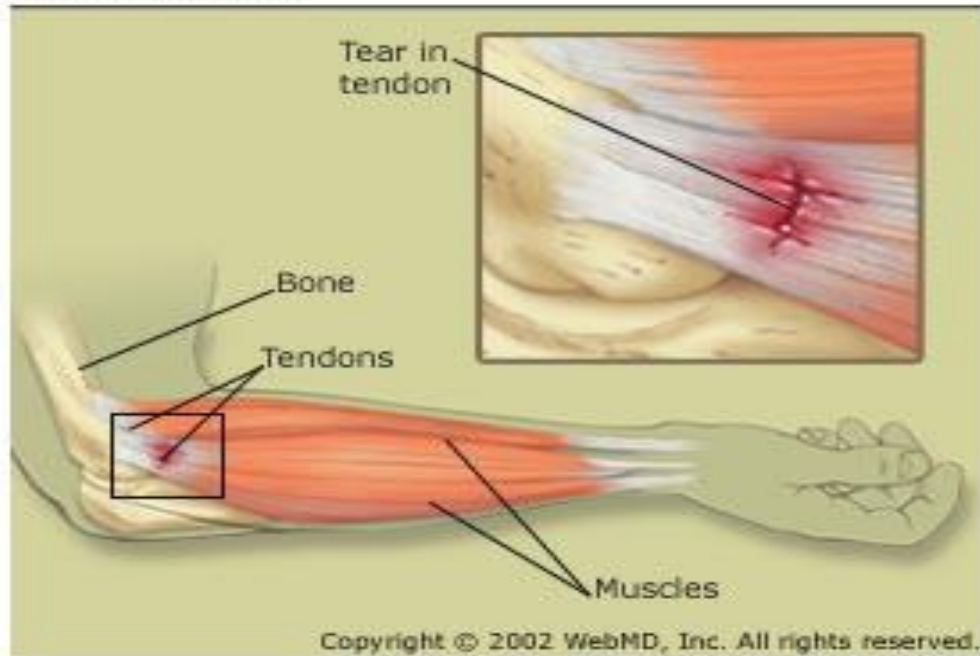


주관절 외상과염(테니스엘보, tennis elbow)

- 팔꿈치를 밖으로 젖히는 힘
- 팔꿈치 부위의 인대에 염증이 생김으로서 일어난다.
- 증상은 팔꿈치가 붓고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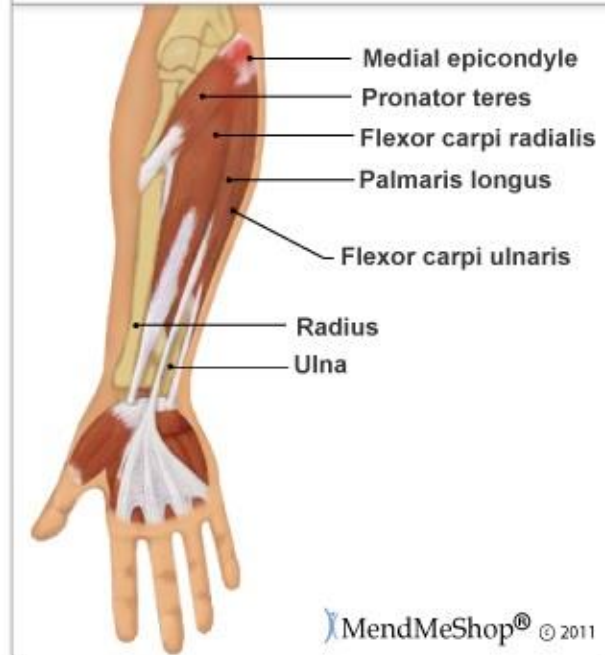


Tennis Elbow



VS.

Medial Epicondylitis
(Golfer's Elbow)



내상과염
(Golfer's elbow)

→ 팔꿈치를 안으로
젖히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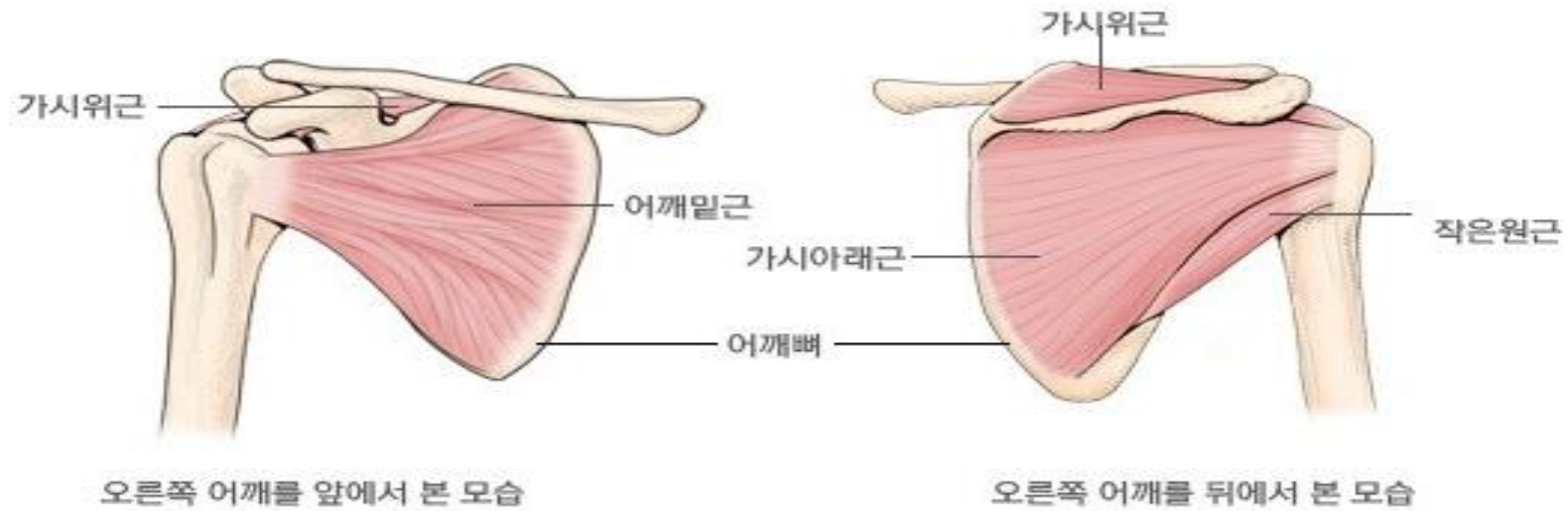
회전근개손상(Rotator cuff injury)

어깨관절(견관절)

-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섬유의 유합에 의해 형성
- 관절낭과 함께 가동성과 강인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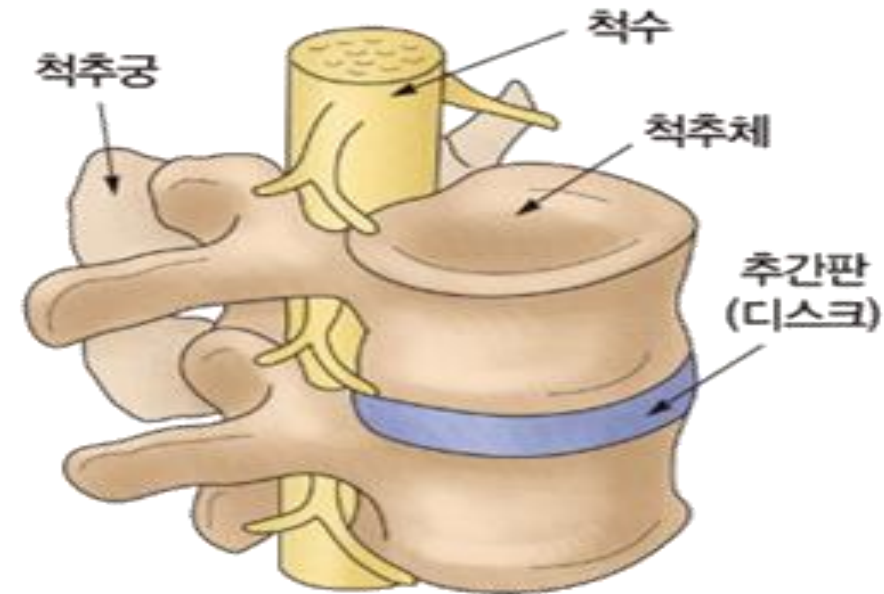
근육 힘줄에 염증

- 증상은 통증을 동반하고 어깨를 움직이는데 장애가 온다.



추간판 탈출증(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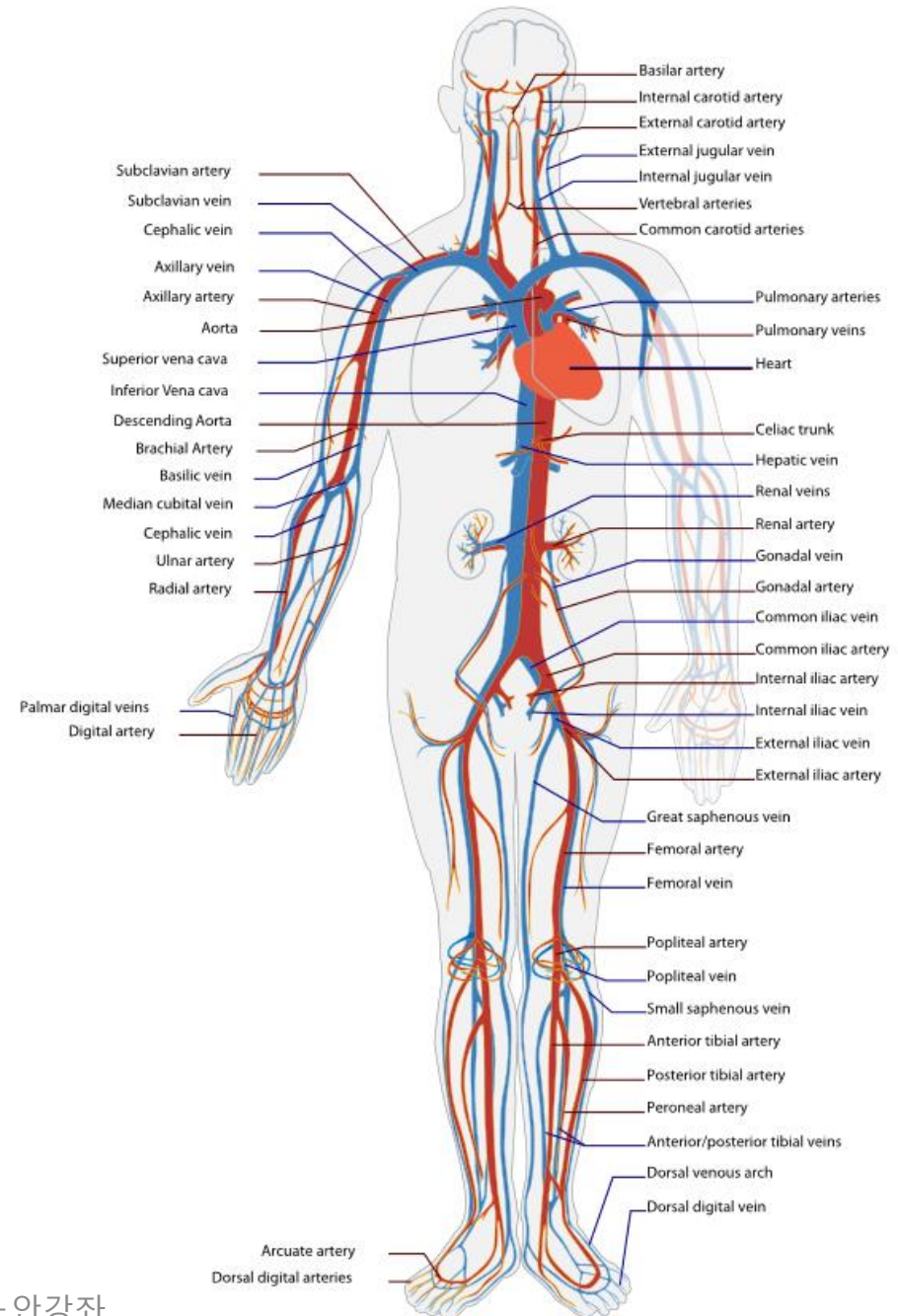
- ▶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몸의 충격을 흡수시켜 주고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추간판, 일명 디스크
- ▶ 나이가 들면 수핵의 수분함량의 감소로 탄력성이 떨어짐. 나쁜 자세나 사고 등 외부적인 자극이 가해져 디스크가 밀려나 주위 신경근을 자극하여 통증 발생
- ▶ 증상 : 허리나 목 통증, 다리나 팔로 번치는 신경증상



뇌심혈관계 질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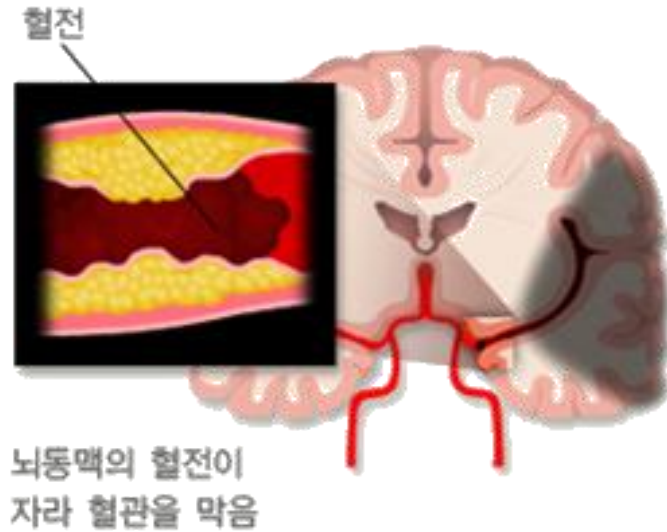
혈관계

- 신체 각 부위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
-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졸중

- ▶ 뇌혈관의 문제로 뇌기능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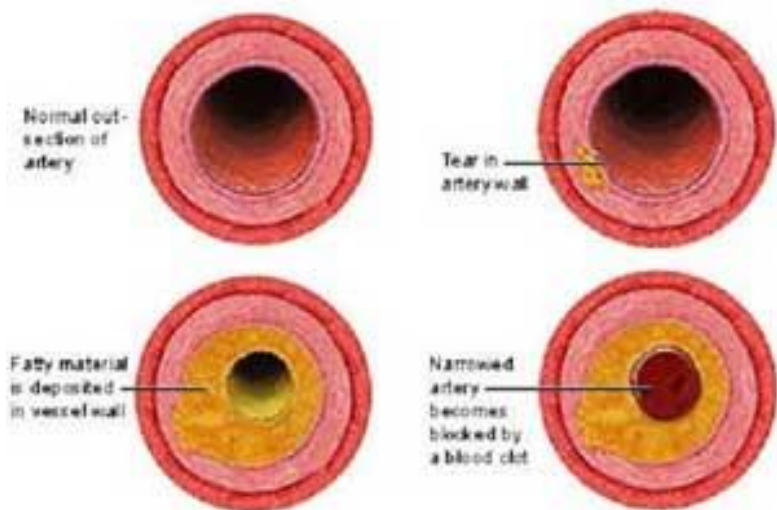


출혈성 뇌졸중
(뇌출혈)

심혈관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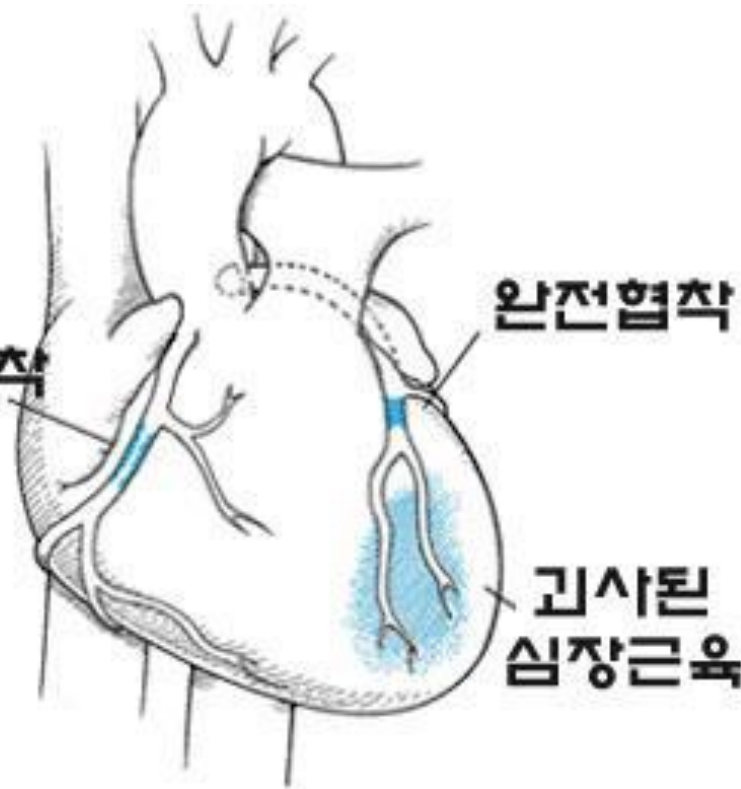
심장에 피를 돌게 하는 '관상동맥'의 문제로 심장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

협심증



부분협착

AD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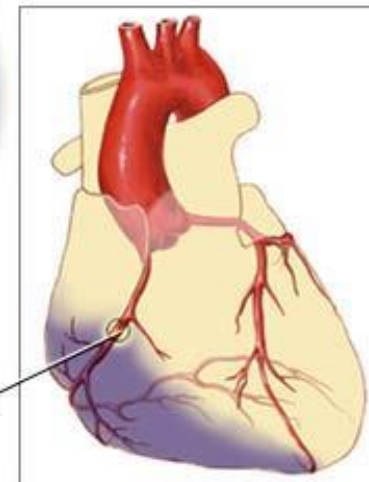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안강좌

심근경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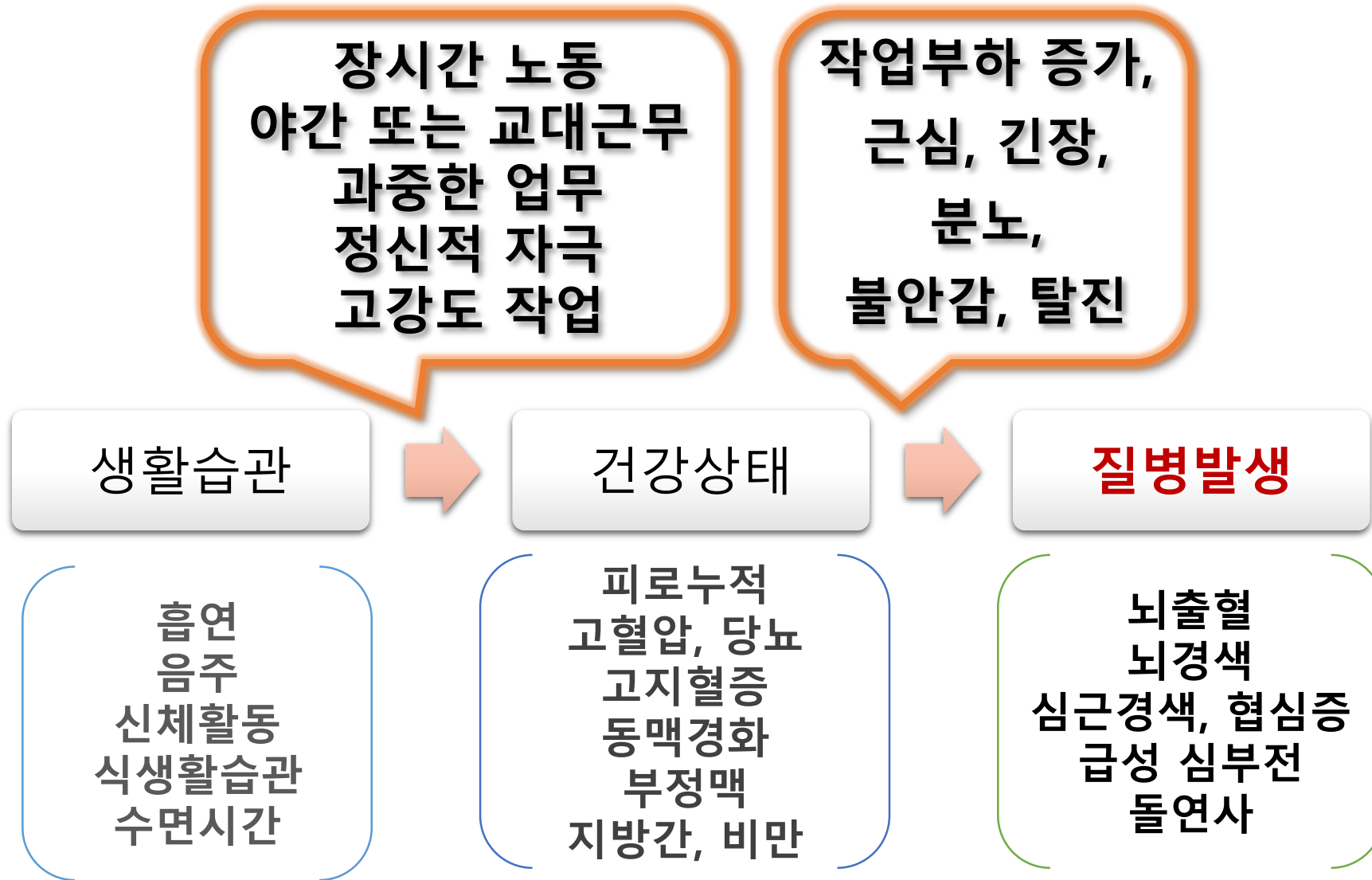


Damage and death to heart tissue shown in purple



ADAM.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

구 분		위험요인
개인적 요인	유전적 요인	연령, 성, 가족력
	건강상태 요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생활습관 요인	흡연, 운동부족, 휴식부족, 음주
작업 관련 요인	화학적 요인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틸렌클로라이드, 니트로글리세린
	물리적 요인	소음, 온열작업, 한랭작업
	사회 심리적 요인	업무량 및 업무자율성
	작업 관리적 요인	교대근무, 야간근무
	복합적 요인	운전작업
	정신적 요인	갑작스러운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요인	갑작스러운 육체활동

직업성 암

-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후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더라도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 직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발생한 암.
- 특징
 - ✓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흔하고,
 - ✓ 비직업성 암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향
 - ✓ 발암물질의 노출 부위에 암이 발생 ex) 피부암, 폐암
 - ✓ 잠복기 : 암 발생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 일반적으로 처음 노출 시기부터 진단까지의 기간.
 - 조혈기계 암은 1년 이내도 가능하나, 고형암은 10년 이상. 석면에 의한 중피종의 경우 더 긴 것이 일반적.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노출수준, 노출양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대체로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직업성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집단에서 특정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음.

대표적인 직업성 암

- 폐암
- 백혈병
- 악성 중피종 (석면)

정신질환/자살

- 일터에서 겪는 스트레스
- 장시간 노동
- 고용불안
- 교대근무
- 직장 폭력

주요우울장애 (우울증)

-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 무가치감이나 죄의식
 - 사고, 집중력, 의사결정의 장애
 -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사고
 - 식욕감소, 불면증
 - 에너지 감소, 피곤
-
- 최소 2주 이상 지속

원인 : 유전 등 생물학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 외상을 입으면서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나타나는 장애
 - 전쟁, 교통사고,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폭행, 강간, 테러 및 폭동, 홍수, 폭풍, 지진, 화산폭발 등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 증상
 - ✓ 재경험 : 사고에 대한 반복적 회상, 악몽
 - ✓ 회피 : 그러한 외상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회피
 - ✓ 과민 : 잘 놀람, 짜증 등
 - ✓ 증상 기간이 1개월 이상
 - ✓ 우울, 불안, 집중 곤란, 흥미 상실, 무관심하거나 멍한 태도, 수면 장애 등 동반
 - ✓ 지연형 PTSD

급성스트레스장애 acute stress disorder

- ✓PTSD 와 동일한 증상.
- ✓사고 후 4주 이내 나타나고 증상 발현 기간이 2일~4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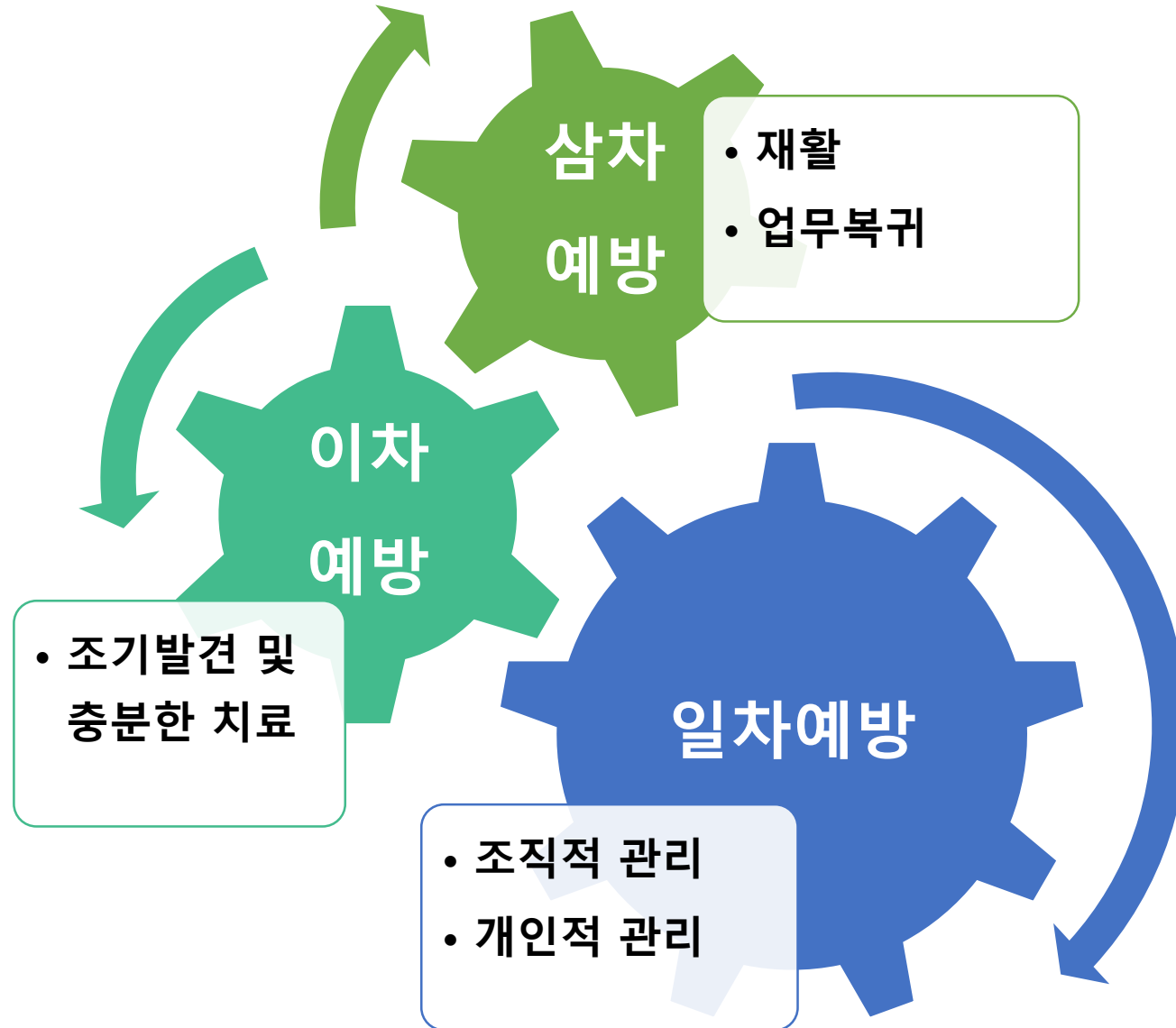
적응장애 adjustment disorders

-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 ✓의미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반응이나 비적응적 반응 → 사회적, 직업적으로 기능적 장애를 보임.
- ✓3개월 이내 시작,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음.



산재 승인 받으면 끝?

예방과 관리



산재 승인

가급적 공상보다는 산재 승인을 받기

제대로 치료 받기

마음 놓고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는 여건 만들기

- 인력 총원
- 병가/휴가 보장

건강한 복귀

업무적합성평가
동료들의 지지
재활/치료 보장

업무적합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당해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것

-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가
- 동료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업무수행에 적합한가

단순히 질병의 유무와 그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 속에서’ 당해 근로자의 질병상태 또는 감수성 요인 및 동료근로자에 미칠 영향도 함께 평가하는 것

건강상태(질병유무 및 정도)만을 가지고 합격/불합격 식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할 업무와의 관련성 속에서 역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업무적합성 평가의 원칙과 실제,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2016

위험 드러내기

현장 공론화

노동자들의 이해와 공감대
→ 참여

개선 대책 마련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및 요구

충분한 치료와 재활, 복귀까지 체계

작업 조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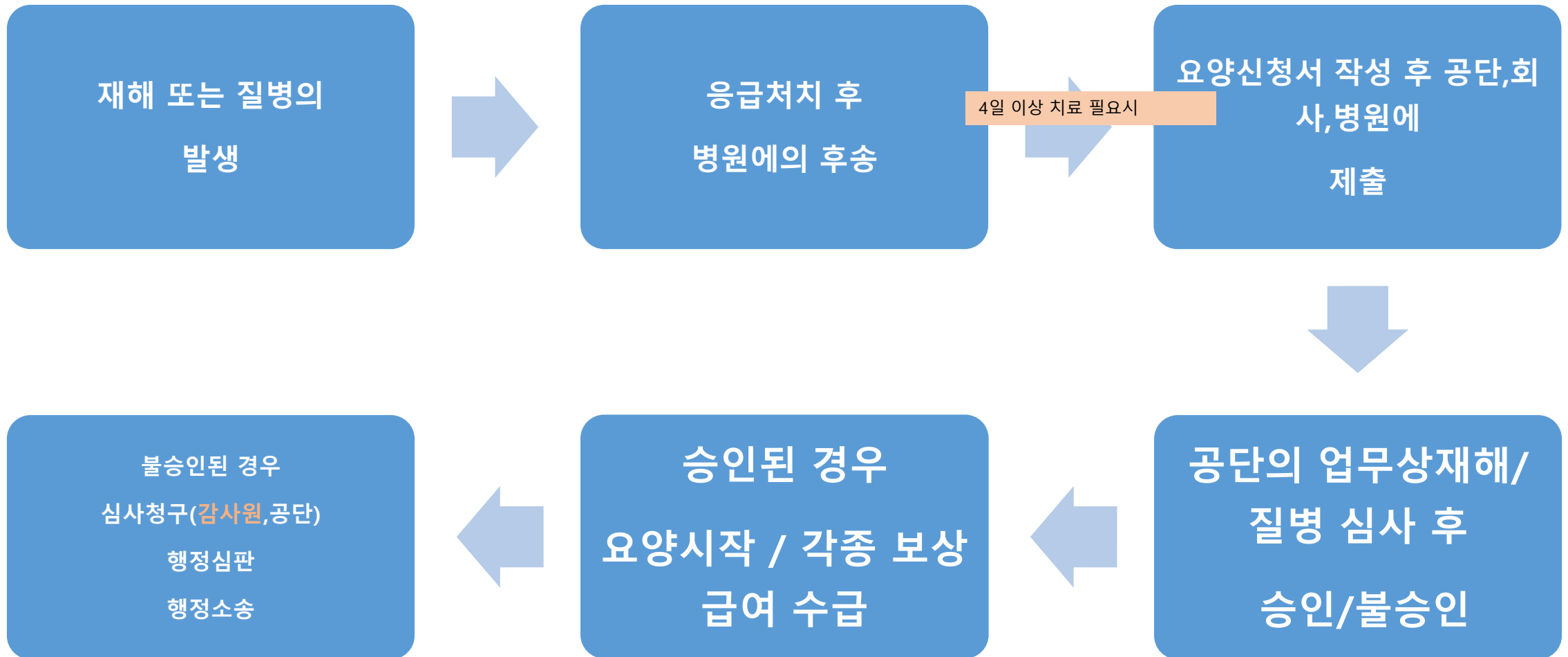
작업 환경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음.

→ 일상적인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이어가자.

산재처리절차와 판정

법률사무소 시대 조애진

산재발생시 처리절차



요양신청서

- 산재요양신청서에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음. 문송면 수은중독 사건 때 관할기관이 산재신청을 반려한 사유 중 하나가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
- 개정 전 법은 반드시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 날인거부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 시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음.
- 2018년부터는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 제약요인을 없애기 위해 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 붉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 면)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7일
재 해 자	성명(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영문명 대문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재해발생 일시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분			채용일자: 년 월 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직종:
(사업주)와의 관계	보험가입자 사업주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실제사업주(동업자포함) <input type="checkbox"/> 하수급사업주			
	친인척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친인척 ()			
사 업 장 및 재 해 관 련 내 용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업무상 사고 <input type="checkbox"/> 업무상 질병(진폐·CS2 포함) <input type="checkbox"/> 출퇴근 재해				
	사업장명	사업주명	연락처(☎)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주소				
재해 발생 경위(별지사용 가능)					
× 작성방식: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위 재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음주, 폭행 등의 사유로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재난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위 재해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명(), 연락처(), 재해자와의 관계()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소재지:		
의료기관명:			소재지:		
<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장 >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아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토달서비스(totalcomwel.or.kr) 포함)에 제출하는 것을 위임·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위임 받는 자(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

주치의 소견서

- 상병코드와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함.
-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사고성과 진구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진료시에도 상세히 의사에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복합요인이라면 사고로 기존질환이 악화되었음을 강조)
- 소송에서 상병코드 또는 상병명 때문에 문제되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함.

재해 발생시의 대응

1

- 응급조치 및 현장상황의 채증 등 분석
- 초기 증거 및 목격자의 확보, 목격자 또는 동료근로자 진술서 작성(중요)

2

- 병원 후송 후 응급진료기록지 등 작성
- 노조 담당자가 있다면 재해상황 파악 및 재해조사서 등 작성

3

- 사망의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 작성/접수
- 공단의 재해조사에 대한 대응(사고 경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공단이 묻고 사업주가 아무렇게나 자기 유리한대로 답하는 경우 다수, 특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

상병별 구체적 대응

근골격계 질환

(최근 질판위 쟁점-울산)

- 쉽사리 수술부터 받지 말 것
- 업무관련 동영상 등을 미리 확보할 것
- 동료근로자 중 동일 상병 관련 재해자 유무 조사
- 근골격계 관련 유해요인 조사보고서 등 자료 확보
- 주치의 소견서 작성시 우호적 의사 표명 부탁
- 소견서 작성시 퇴행성 질환, 기존위험인자 강조 등 부정적 요인이 기재되지 않도록 할 것

뇌심혈관계

질환

- 119통해 응급실로 내원시 “구급구조 증명원”을 발급받을 것
- 과로성 재해의 경우에 가족력(심근경색 등)에 있어 소극적 기재 요망
- 평소 개인 건강검진(건보공단)시 음주 흡연력 소극적 기재 요망
- 응급실 의무기록지 등 작성시 사고경위 정확히 진술하여 기록
- 응급실 의무기록지 작성시 흡연, 음주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대해 소극적 기재 요망

직업성 질병

(암, 난치병 등)

- 가족력에 있어서 소극적 기재 요망
- 동료 중 동일 상병 관련 재해자 유무 등 파악
-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확보
- 위험물 등을 다루는 경우 샘플 등을 확보
- 주치의에게 소견서 작성에 있어 우호적 의사 표명 부탁

연번	주/부/파생	상해코드	상해부위	상병코드	세부상병명(진단명)
1	주상병	06	팔	M751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2	부상병	06	팔	M751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3	부상병	06	팔	M751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4	부상병	06	팔	M758	우측 견관절 관절외손 파열
5	부상병	06	팔	M754	우측 견관절 총괄중추근
6	부상병	06	팔	M1901	우측 견-쇄관절 활관절염
7	부상병	06	팔	M751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8	부상병	06	팔	M751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9	부상병	06	팔	M751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10	부상병	06	팔	M758	좌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근 파열
11	부상병	06	팔	M754	좌측 견관절 총괄중추근
12	부상병	06	팔	M1901	좌측 견-쇄관절 활관절염
13	부상병	06	팔	M771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14	부상병	11	다리	M2322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15	부상병	11	다리	M1396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활관절염
16	부상병	05	목	M4722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17	부상병	05	목	M4722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18	부상병	05	목	M4722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19	부상병	05	목	M4722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20	부상병	05	목	M4722	경추 제7-흉추1번 추간판 탈출증
21	부상병	05	목	M4802	경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22	부상병	05	목	M4802	경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23	부상병	05	목	M4802	경추 제5-6번 척추관 협착증
24	부상병	05	목	M4802	경추 제6-7번 척추관 협착증
25	부상병	05	목	M4802	경추 제7번-흉추1번 척추관 협착증
26	부상병	09	허리	M501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27	부상병	09	허리	M501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28	부상병	09	허리	M501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29	부상병	09	허리	M501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30	부상병	09	허리	M501	제5요추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사망의 경우

병원후송

- 119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시 “구급구조 증명원” 발급
- 응급실 의무기록지 작성에 있어서 기존 위험인자 등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력 소극적 기재

재해경위 작성

- 재해경위에 있어 노동자 과실 유의(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 출석 조사 전 경위서, 증거 등 전반적 사항을 재검토 한 후 조사에 응할 것
- 사고발생 보고서에 목격자의 신원, 연락처 등을 명시하고 최소 2인 이상 목격자 진술서 확보 후 향후 소송을 대비해서 진술서 공증 받아 놓을 것
- 급여 대장 등 확보하여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것

부검의 필요

- 과로성 재해로 추정되어 산재를 준비할 경우 부검을 실시 할 것
- 부검 후 부검감정서를 입수하여 분석할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발급받아 분석할 것

0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털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
-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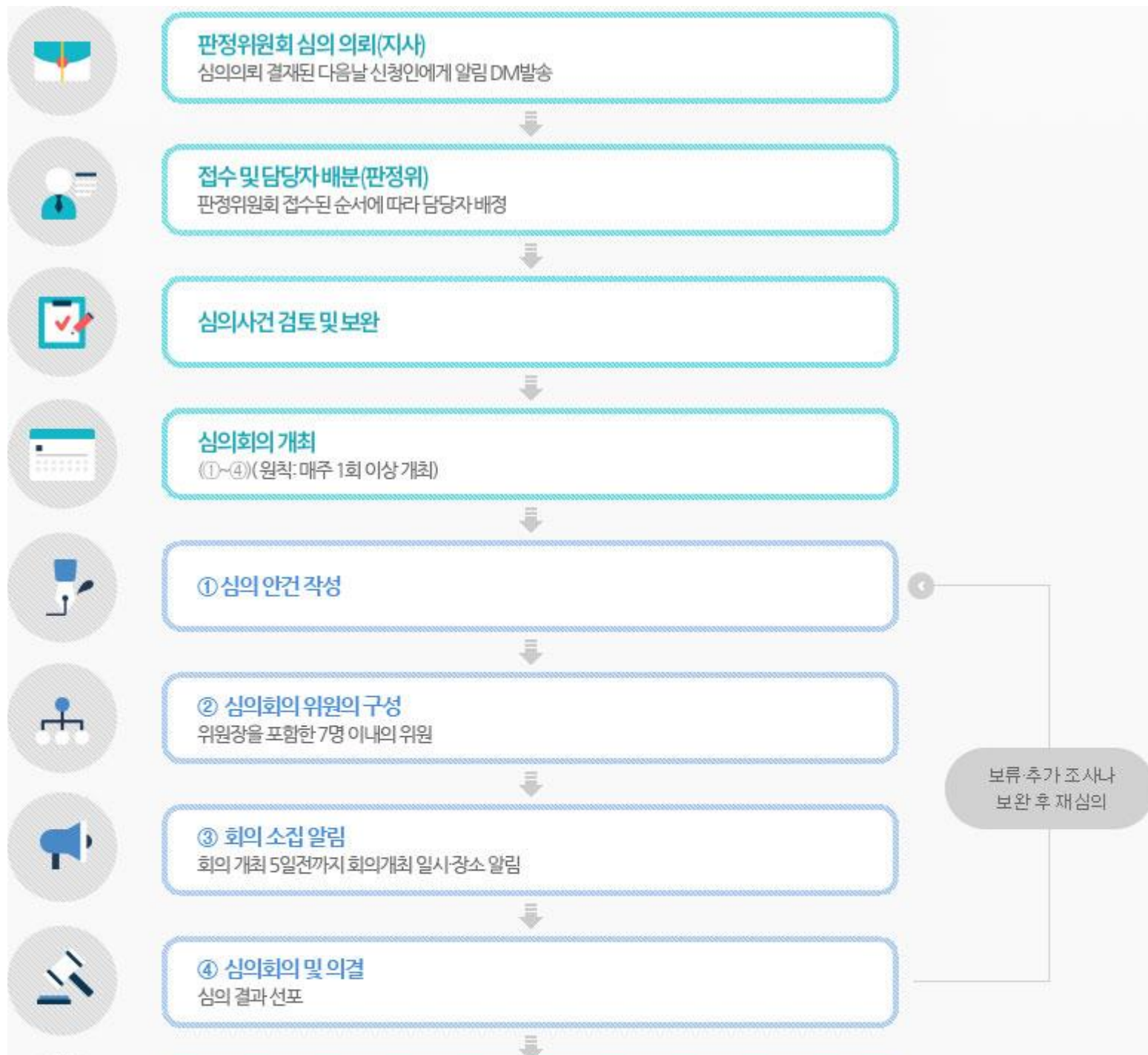
0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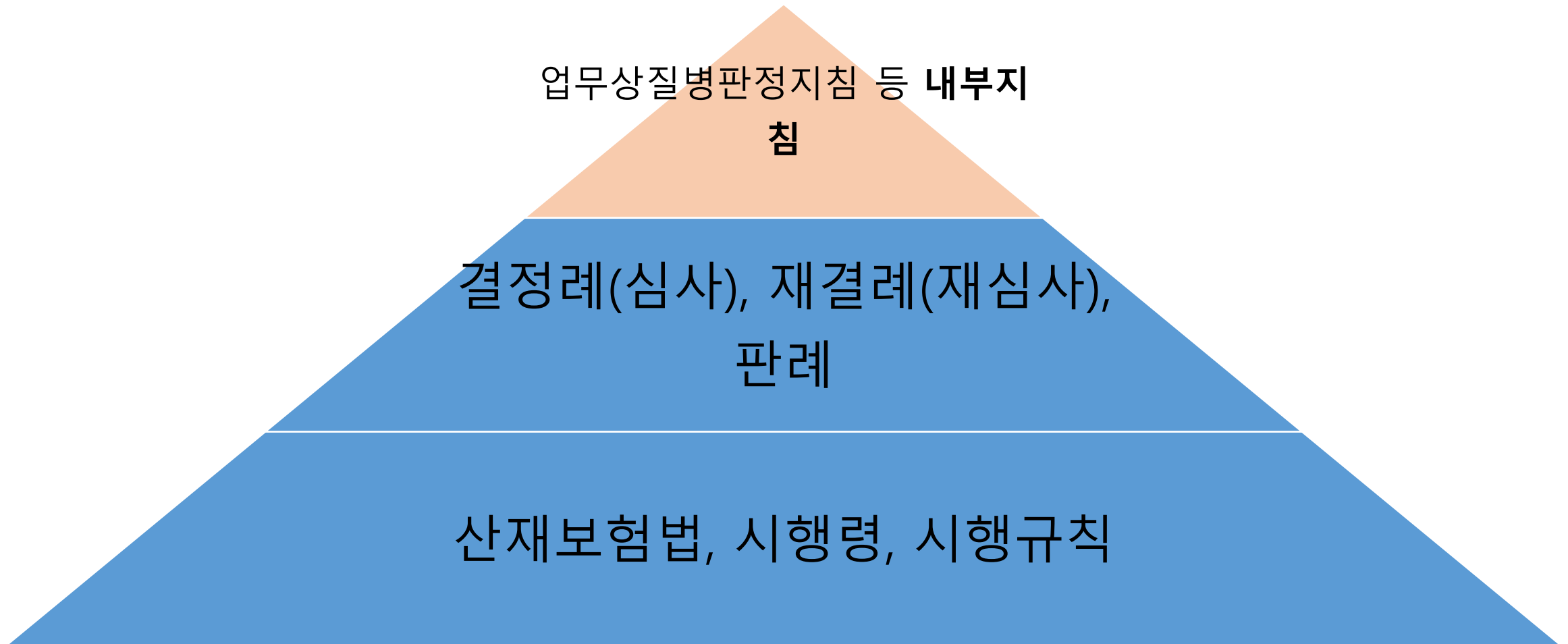
0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산재여부 판단기준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처치, 수술, 그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안함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경과 후,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면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보상액의 산정

1. 요양급여/간병료(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있는 경우, 요양 치료중인 경우)
2.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상병보상연금(요양개시 후 2년/ 폐질등급 1~3급)
3. 장해급여 : 1급(연금 329일분) ~ 14급(일시금 55일분), 7급까지 연금대상
4. 간병급여(수시간병급여/상시간병급여)
5. 유족급여(1300일분), 장의비(120일분) : 연금이 원칙임
6. 민법상 손해배상(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법행위책임, * 과실상계)

산재와 관련한 각종 의문점(1)

1. 산재, 회사가 처리해준다?
2. 산재, 회사가 인정해주어야 신청할 수 있다?
3.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산재처리 가능하다?
4.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산재처리 가능하다?
5. 산재법 적용대상이 아니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
6.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 회사 사장은 산재적용을 못 받는다?

산재와 관련한 각종 의문점(2)

7.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8. 공상처리를 하면 산재처리는 할 수 없다?
9.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10. 산재처리가 종결된 후에는 다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
11. 사고 발생에 있어 노동자의 잘못이 없어야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12. 퇴직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

산재와 관련한 각종 의문점(3)

- 13. 불승인 후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14. 회사 밖에서 다치거나 발병한 것은 산재가 아니다?
- 15. 기왕증이나 퇴행성 질환이 있으면 산재승인이 불가능하다?
- 16. 술, 담배,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많으면 산재승인이 불가능하다?
- 17.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
- 18. 회식 후 귀가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가 아니다?

산재와 관련한 각종 의문점(4)

19. 음주운전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노동조합 행사 참여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관련된 법령 규정(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에 명시되지 않은 질병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23. 소위 “감정노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
24.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판단원칙과 인정기준의 적용 방법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1인 미만과 1인 이상의 차이, 2018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건설 공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현재 1인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제조업 8개 업종이 추가되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 6천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기존 자영업자 가입가능업종 6개는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이었고, 추가 가입이 가능한 업종 8개는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귀금속 및 장식용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별표 3(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13호를 “1호에서 12호에 제시된 노출기간·노출량·잠복기 등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외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본다”로 바꾸었습니다

뇌심혈관계질환 기존인정기준

1. 돌발상황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2. 단기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3. 만성과로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뇌심혈관계질환 변경기준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② 교대제 업무
-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뇌심혈관계질환 변경기준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뇌심혈관계질환 변경기준 3

업무상 질병 판단 시 재해노동자의 업무환경과 건강 상황 고려

1) 업무강도, 책임 등 업무환경 비교시 '유사 업무 수행 동종근로자'와 비교하는 내용을 삭제 (제1의 나목 개정)

2)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건강상태'를 삭제 (제1의 나목 및 다목 개정)

* 재해노동자에게 있는 고혈압, 당뇨, 흡연 등 기초질환을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의 중요 요소로 보기 어려움

출퇴근재해(법령개정)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

다만, 경로 이탈과 중단의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되, 시행령으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 인정

출퇴근재해-연고지 주거

거리사정으로 취업장소 인근에 비연고지 주거를 마련하고 근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취업장소에서 연고지 주거로 바로 퇴근 하는 경우

➔ 연고지 주거를 주거로 인정

근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여 비연고지 주거에 잠시 들러 물건을 챙긴 후 연고지 주거로 퇴근하는 경우

➔ 비연고지 주거는 경유지로 보고, 연고지 주거는 주거로 인정

친구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다음날 아침 그곳에서 직접 출근할 경우

➔ 친구의 집은 주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님

금요일 저녁에 야근 후 퇴근하여 불가피하게 비연고지 주거에 들렀다가 다음날 연고지 주거로 향하는 경우

➔ 비연고지 주거는 경유지로 보고, 연고지 주거는 주거로 인정하여 전체 경로를 출퇴근의 경로로 인정

출퇴근재해-주거의 경계

출근을 위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 아파트 계단은 주거를 벗어난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넘어진 사고

➡ 주택마당은 사적 영역이므로 퇴근이 종료된 것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불인정

출근하던 중 자택 부지내에 있는 차고에서 넘어진 사고

➡ 주택 차고는 사적 영역이므로 출근 미개시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불인정

출퇴근재해-출근의 취업관련성

소정 근무일에 소정 근무개시시각을 목표로 하여 통상적인 시간대에 주거지를 나와
취업장소로 가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늦잠으로 인한 지각 또는 rush hour를 피하기 위하여 늦게 또는 일찍 출근하는 경
우

➔ 취업관련성 인정

전날 내리 폭설로 인해 출근시간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평소보다 일찍 주거지를 나
서든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소개를 받기 위해 주거지에서 직업소개소로 가는 경우

➔ 취업관련성 불인정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후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장소로 가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출퇴근재해-퇴근의 취업관련성

업무종료 후 즉시 주거지로 향한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 업무 : 업무장소 정리, 정돈, 샤워 등 마무리하는 행위까지 포함

근무시간 종료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조퇴하여 귀가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18시에 업무가 종료된 노동자가 사무실에서 운동 후 21시에 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업무 외 사유로 상당한 시간을 머문 경우로서 취업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2시간) 초과로 불인정

출퇴근재해-통상의 경로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출근시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오토바이 통근자가 귀가하던 중 악천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우회하여 진행 중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퇴근길에 친구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주거지와 반대방향으로 가던 중 사고

➔ 일탈에 해당

퇴근길에 통상의 경로상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를 하는 경우

➔ 중단에 해당

※ 일탈, 중단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동(일탈 후 다시 통상의 경로안으로 돌아오는) 중의 사고도 보호대상이 아님을 유의

출퇴근재해-이동경로상의 재해

퇴근 후 일용품 구입을 위해 경로를 우회한 곳에 위치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진열된 물건이 넘어져 부상

➔ 이동 경로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퇴근중 혈액투석을 마치고 의료기관을 벗어나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전도되어 부상

➔ 이동 경로상의 재해이므로 출퇴근 재해 인정

장기 요양중인 배우자를 간병하던 중 의료기관내 계단에서 넘어짐

➔ 이동 경로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출퇴근재해-범죄행위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

➔ 재해의 주된 원인이 무면허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불인정

병원에서의 요양으로 운전면허 갱신기간 만료일이 2개월여 도과한 것을 모르고 퇴원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재해의 주된 원인이 운전미숙이 아니고,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움

감사합니다!
